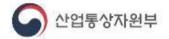
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·접수 및 수급세대 선정 지침

2023. 03



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·접수 및 수급세대 선정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(전담기관: 한국에너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.))의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사업(이하 "지원사업" 이라 한다.)"이라 함은 등유 및 LPG를 주(主)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'22년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및 LPG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기초생활수급자"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.
- 3. "대상자"라 함은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, 소득 및 사용에너지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.
- 4. "대상세대"라 함은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말한다.
- 5. "수급자"라 함은 지원사업 수급 결정이 완료되어 지원사업을 받는 자를 말한다.
- 6. "수급세대"라 함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말한다.
- 7. "신청인"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로서, 대상자 본인을 말한다.
- 8. "대리인"이라 함은 신청인 세대의 세대원(신청인 본인을 제외한다) 및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에 따른 대리인(수급권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형제자매, 지자체로부터 대리인으로 허가 받은 통・반장, 이장, 사회복지사 등), 담당 공무원 등을 말한다.
- 9. "난방용 등유·LPG 카드"(이하 "등유·LPG 카드"라 한다)라 함은 수급세대가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발급받는 전용(專用)의 실물카드를 말한다.
- 10. "카드사"라 함은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등유·LPG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를 말한다.

- 제3조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등유 및 LPG를 주(主)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세대로서,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.
 - 1.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'22년 연탄쿠폰 수급 세대
 - 2.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'22년 등유바우처 수급 세대
 - 3.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'22년 긴급복지지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
 - 4.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 - 5.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- 제4조(사업 신청·접수) ①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"지원사업 신청서"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 - ② 신청인은 대리인으로 하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은 지원사업 신청서 외에 신청인의 대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"위임장"(별지 제2호서식)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을 경우 직권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 - ④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지원사업 신청서 상의 자격요건(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여부, 등유·LPG 보일러 사용 여부, 타 난방비, 급여 등 중복 수급여부 등)을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수급자격의 검토) ① 시·군·구청장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장을 포함한다. 이하 "시·군·구청장 등"이라고 한다.)은 제4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격 조사표 (별지 제4호서식)에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해당 여부

- 2. 제3조 각호의 에너지이용권 · 연료비 및 급여 수급 여부
- 3. 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 수용 여부
- 4. 신청인 세대의 주(主) 난방수단(등유 보일러 또는 LPG 보일러 설치 여부)
- ② 제1항제4호의 난방수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난방수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(LPG 배관망 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시·군·구에서 대상세대의 난방수단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 등)
- 2. '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중 등유 · LPG를 결제한 이력이 있는 세대로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유선 등을 통해 등유 · LPG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
- ③ 시·군·구청장 등은 제1항제4호의 난방수단 확인 업무를 이장·통장·반장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수급세대 결정) ① 시·군·구청장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신청 건에 대해 자격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청장이 최종 결정한 명단을 곳단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은 필요시 시·군·구청장 등에게 제1항의 수급세대 결정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,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시·군·구청장 등에게 수급세대 결정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7조(수급세대 결정 통지) 시·군·구청장 등은 "수급세대 결정 통지서"(별지 제3호서식)에 지원 결정 여부, 지원금액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.
- 제8조(수급세대 발굴) 시·군·구청장 등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의 수급세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.

부 칙 <2023.03.07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, 특별 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[별지 제1호서식]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신청서

_		구급자 세대 대상 난병 단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				^{중 제1쪽} 청서						
접수번		접수일자	-10 410-10 7-1		리기간 14일							
신 청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 등록번호)		자택전화 휴대전화								
인(주소											
대 상	소득구분	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[
자	난방수단	방수단 [] 등유보일러 [] LPG보일러										
		대상	당자 확인사항									
난병 수여 세대 수용 감호	절기 _ 비지원 _ 혜현황 - 원 모두가 자의 처위 법」에 따	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여부 등유바우처 수급세대 여부 연탄쿠폰 수급세대 여부 긴급복지지원금(동절기 연료바) 수급세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지 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「형 게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지 여박	대 여부 컵」에 따른 큰 의 집행 및 또는「치료 부	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 ☐ 예	□ 아니오 □ 아니오 □ 아니오 □ 아니오 □ 아니오							
특별	자치시?	 신청	대리인) 성명 : 명인과의 관계 : 현(직권신청시): 당 • 군수 • 구:	(다	년 월 (서명 또 라리인이 신청하는 (서명 또	경우)						
유 의 사 항 담당공 확인사	2. 대성 3. 신청 4. 동절 1. 국민 2. 주민 3. 등위 4. '22 함함 5. 세대 6. 세대	대상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상자로 확정시, 은행 지점 또는 ARK 성서 미기재, 내용 오류 등으로 대상기 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등유·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임등록표 등본 우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년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 내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[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 를 교정시설 또는 [지료감호법] 어	응을 통해 카드 발: 다 선정에서 제외될 G 난방비 지원금에 사용하는 세대인지 지지원금(동절기 1 캠)에 따른 보장, 라고받고 「형의 집 I 따른 치료감호시	급 가능 ! 수 있음 서 동절기 에너지 확인 연료비) 수급 여 시설에서 급여를 집행 및 수용자: 1설에 수용 중인	바우처 금액을 감약 부 확인 : 수급하는지 확인 의 처우에 관한 I지 여부	백 후 지(인						

(3쪽 중 제2쪽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,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

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시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,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 (난방용 등유·LPG 카드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!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 :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안내 및 유의사항

■ 신청인(대리인)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

- 1. 본인, 세대원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담당 공무원
- 2. 지자체로부터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통·반장, 이장, 사회복지사 등

■ 유의사항

- 1. 신청정보는 등유LPG 카드 발급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한국광해광업공단,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인의 자격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에너지공급자, 카드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.
- 2. 「에너지법」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,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(3쪽 중 제3쪽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「에너지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·제17조 •제23조·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내역

수집항목	성명, 주소, 연락처, 대상자 자격판정자료(신청서,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, 세대정보, 개인
THST	이력(서비스 제공이력)
	•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
	•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등 업무에 활용
수집·이	• 등유·LPG 카드 제작 및 배송,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
용	•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·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
목적	• 허위·초과 결제,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, 중복지원금지에 관련한 사항 등
	•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및 에너지복지 시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
	• 그 밖에 에너지복지 제도 운영
보유기간	5년

- ※ 위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 • 이용	▪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
목적	▪ 허위 • 초과 결제,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적정급여 관리
보유기간	5년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에너지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[]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
※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필요시) 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

연락처: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

[별지 제2호서식] 위임장

위 임 장

위임인(위임하는 사람)

선 명

주민등록번호:

주 소

전 화 번 호:

대리인(위임받는 사람)

성 명

주민등록번호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위임인(신청인)과의 관계:

위 위임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사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2023 년 월 일

위 임 인: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[별지 제3호서식] 수급세대 결정 통지서

~] 결정(적합)	\ 74	저도되신					
수급세	` _] 결정(부적합)] 사용증지) 걸	정 롱지서					
※ 통지내용에 대한 (┗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			(앞쪽)					
신청인 성명									
(대상자) 주 소									
 [] 적 합									
귀하의 신청내역	을 조사·심의한 결과,	기초생활수급자 세	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	입비 지원사업 수급자					
(난방용 등유·LPC	G 카드 발급 수급자)	로 결정되었음을 알	려드립니다.						
수급자 성명	지원 금액	지원 형태	사용 가능	기간					
		카드	2023. 3.27 ~ 2	2023. 6.30					
* 난방용 등유·L	PG 카드 사용처 : 전국	구 등유·LPG 판매소							
[] 부 적 합									
부 적 합 사 유	[]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미인정 [] 등유·LPG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[] 등유·PS처 ,긴급복지지원금(동절기 연료비), 연탄쿠폰 수혜자,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[] 그 밖의 사유 (예 : 사망, 이사, 연료전환 등 그 밖의 사유 기입 요망)								
안 내	지원이 부적합한 2 2. 신청기간 내 신청	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.	신청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서						
[] 카드 사용	· 중지								
일 자	년 월	일부터 카드 사용을 중	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[]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사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(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) []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(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) 다]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(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) []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(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) [] 등유-LPG 카드를 판매・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									
	[] 그 밖의 사유()						
			년	월 일					
		담당자: 직급	급 성명						
특별지	ŀ치시장·특별	자치도지사 · ·	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직인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(뒤쪽)

난방용 등유·LPG 카드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

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·LPG 구입비 지원 수급자 준수사항

1. 난방용 등유·LPG 카드는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(사용자 준수사항)

- 등유·LPG 카드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·관리해야 하며, 제3자가 소지·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- 전출입, 이사 등의 사유로 등유·LPG 보일러를 제외한 다른 난방수단을 이용하게 된 경우 등유·LPG 카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.
- 등유·LPG 카드을 위법·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「에너지법」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급자 신고, 행정기관 확인조사, 등유·LPG 카드 지원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.

■ 유의사항

- 1.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신청(변경) 등에 대하여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,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- 2.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3.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(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유·LPG 카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등유·LPG 카드의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[별지 제4호서식] 수급자격 확인서

수급자격 확인서

성명	예) 홍길동	생년 월일	예) 1900.00.00	주 소	00시 00구 00동 00번지	점검 일자	예) '22.03.09
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순번	점 검 사 항	확 인 결 과								
1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여부	□ 적합 (생계[], 의료[], 주거[], 교육[])□ 부적합								
2	□ 적합 타 에너지이용권·연료비 및 급여 수급 여부 (등유바우체], 연단쿠폰], 긴급복자자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[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 수급[])									
3	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여부	□ 적합(세대원 중 일부만 수용, 또는 수용자 없음) □ 부적합(세대원 전원 수용)								
4	대상세대의 主 난방수단 (등유 또는 LPG 보일러 사용 여부	□ 적합 (등유 보일러[], LPG 보일러[]) □ 부적합								

	•	기타	점검	의견	:	(추가의	[년	则	건의시	항	5	자유	롭게	기술)					
				소속	ř:				점	검자	성	명 :			(인 / 서	명)		
\vdash																			